

**발의안 제41호**

2013-2014 정기 회기의 주 하원 법안 639에 의해 발의된 본 법안(2013년 제정법, 727장)은 California 주 헌법 XVI조의 조항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제안된 것이다.

본 발의안에서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에 절(section)을 추가한다. 따라서,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조항이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발의 법안**

1절. 5y조(998.540절로 시작)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부 6장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y조.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

998.540. 본 조는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으로 알려져야 하며 인용될 수 있다.

998.541. (a) California 주는 거의 2백만에 달하는 재향군인들의 고향으로, 이 숫자는 미국 내 어느 주보다도 많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수의 California 출신 참전 용사들이 우리 커뮤니티로 돌아올 예정이며, 이들 중 다수가 주택 공급, 일자리, 정신 건강 및 약물 치료, 그리고 신체 기능 회복 훈련을 필요로 한다.

(b) 유감스럽게도 California 주는 노숙 재향군인의 수 또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국내 노숙 재향군인의 거의 25 퍼센트가 California 주에 살고 있으며, 19,000여 명에 달한다. California 연구조사 사무국에 따르면, Los Angeles는 노숙 재향군인 숫자에서 1위를 기록했고, San Diego 지역이 3위, 그리고 San Francisco 베이 지역이 9위를 기록했다.

(c) 더욱이, 더 많은 OIF/OEF 재향군인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여성 재향군인 및 그들의 자녀들도 노숙 재향군인 인구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국내 노숙 재향군인 인구 구성의 국면이 변화하고 있다.

(d) 여성 재향군인이 겪은 성폭행에 의한 외상 발생률의 증가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남용 및 실업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노숙 재향군인들은 감옥, 병원, 치료 프로그램 등을 넘나드는 생활이 자주 반복되어,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들 또한 불균형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e) 주의회는 우리 지역 재향군인들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협조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진척시켜야 한다. 그러한 접근 방법은 주택 공급 및 서비스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f) 5년 전, 주는 발의안 제12호를 승인함으로써 우리 재향군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 발의안은 재향군인들이 CalVet 주택 자금 용자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단독 세대용 주택, 농장 및 이동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9억 달러(\$900,000,000) 규모의 일반 공채 발행에 관한 것이다.

(g) 국가적인 경제 위기 및 주의 주택 공급 침체가 재향군인들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와 결합한 결과, 발의안 제12호에 의해 승인된 농장 및 주택 자금 용자 프로그램은 참가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 발의안의 통과 5년 후, 전체 9억 달러(\$900,000,000)는 2000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제 32 호로부터의 5억 달러(\$500,000,000) 중 일부가 그러하듯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다.

(h) 그러는 동안, 가격이 적당하고 지원이 있으며 과도적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향군인들의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자원도 여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i)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에게는 현재 재향 군인 인구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수요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12호 재향군인 공채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j)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은 기존의 발의안 제12호의 공채 자금 중 6억 달러(\$600,000,000)를 재편성하여, 재향군인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의 건설 및 재건 용도로 잡아 두고, 서비스를 주택 공급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공채 자금을 재편성해도, 이 법은 여전히 기존 CalVet 농장 및 주택 자금 용자 프로그램을 위한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유지한다.

(k)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법은 재향군인들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서비스 옵션을 확대하고, 공공 기금을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노숙 재향군인의 수와 그에 수반되는 공공 비용을 줄이고, California 주를 2015년까지 재향군인들이 노숙자가 되는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이다.

998.542. (a) 주 일반공채법(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16720절로 시작))은 간간이 수정되었으며, 여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article)에 의해 발행이 승인된 공채,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을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며, 해당 법의 조항들은 마치 본 조 내에 전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 조 내에 포함된다. 본 조 내에서 언급한 모든 "여기에(herein)"는 본 조와 해당 법 둘 다를 가리킨다.

(b) 주 일반공채법을 위해 재향군인 업무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이사회라고 칭한다. 재향군인 업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주택 금융국(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및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998.543.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이사회(Board)"는 재향군인 업무부를 의미한다.

(b) "공채(Bond)"는 재향군인 공채를 의미하며, 주 일반공채법을 채택한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주 일반공채이다.

(c) "공채법(Bond act)"이란 주 일반공채의 발행을 승인하고 주 일반공채법을 참고 문헌으로 채택한 본 조를 의미한다.

(d) "위원회(Committee)"는 998.547절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Housing for Veterans Finance Committee)를 나타낸다.

(e) "기금(Fund)"은 998.544절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공급 기금(Housing for Veterans Fund)을 나타낸다.

998.544. (a) 총액 6억 달러(\$600,000,000)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에 해당하는 공채는 어떠한 상환채 금액 또는 그 중 필요한 만큼의 상당 액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b)항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16724.5절에 따라 일반공채 비용 회전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공채는 판매될 때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여야 하며, 이로써 California 주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 원리금의 지급 기일이 될 때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대로 지불할 것임을 보증한다.

(b) 본 절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공채의 수익금은 2014 재향군인 주택 공급 및 노숙자 방지법(3.2조 (987.001 절로 시작))에 의해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세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을 개정하거나 후속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차후의 법률 제정 과정에 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주의회는 때때로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 및 책임성 개선을 목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결에 의해 본 법률의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d) 본 조에 의해 발행 및 판매된 공채의 수익금은 재향군인 주택 공급 기금(Housing for Veterans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기금은 이에 의하여 신설된다.

998.546.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공채는 주 일반공채법(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 (16720 절로 시작))에 규정된 대로 준비, 실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법 16727절의 (a)항과 (b)항을 제외한 주 일반공채법의 모든 조항이 해당 공채 및 본 조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써 마치 본 조 내에 전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 조 내에 편입된다.

998.547.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공채를 주 일반공채법에 따라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인가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다. 본 조를 위해, 재향군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위원회는 약칭 "위원회(committee)"로 하며, 이 용어는 주 일반공채법에서도 사용된다. 위원회는 회계감사관(Controllor), 재무장관(Treasurer), 재무 국장(Director of Finance), 상무,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Secretary of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및 재향군인 업무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혹은 그들이 지정한 대리인들로 구성된다. 재무장관이 위원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모여야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998.548. 위원회는 998.544절에 명시된 조치들을 수행하기 위해 본 조에 따라 승인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할 공채 금액도 결정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수행하도록 공채의 연속 발행이 승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모든 공채가 어느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998.549. 주의 정규 세입에 더하여, 해마다 공채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다른 세입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합계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입 징수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998.550. 정부법 13340절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의 총액과 같은 금액이 본 조를 위해 국고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충당된다.

(a) 본 조에 의거, 발행 및 판매된 공채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 기일이 될 때, 그러한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액

(b) 회계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충당된 것으로, 998.551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총액

998.551. 본 조를 이행하기 위해, 재무 국장(Director of Finance)은 본 조의 이행을 목적으로, 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인출을 인가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본 절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금액은, 본 조 이행을 목적으로 공채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41

998.552. 공채 발행 비용 지불에 사용된 프리미엄을 초과하여, 판매된 공채에 대한 프리미엄과 미수 이자로부터 과생된 것으로, 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남겨두어야 하며, 공채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액으로서 일반 기금으로 넘겨주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

998.553. 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16720 절로 시작)에 의거하여, 공채 발행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는 공채 판매로 생긴 프리미엄을 포함한 공채 수익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본 공채법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비례적으로 나눠져야 한다.

998.554. 이사회는 본 조 이행을 목적으로 정부법 16312절에 따라, 공동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으로부터의 대출을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어음을 포함(단, 그에 국한하지 않음)하여, 또 다른 인가된 형태의 중간 금융이 포함된다. 신청 금액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본 조 이행을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했으나 팔리지 않은 공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받은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배분한다.

998.555. 공채는 정부법 제2권 제4부 제3편 4장의 6조(16780절로 시작)에 따라 상환될 수 있으며, 이 조는 주 일반공채법의 일부에 해당한다. 본 조에 기술된 공채의 발행에 대해 주의 유권자들이 승인하는 것에는 원래 본 조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된 공채 또는 이전에 발행된 상환채에 대한 발행 승인도 포함된다.

998.556. 본 조 또는 주 일반공채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은 공채 수익금의 투자 및 그 수익금에 대한 수입의 투자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리베이트, 벌금 또는 그 밖에 연방법 하에 요구되는 지불금을 지급하거나, 연방 세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그러한 공채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캘리포니아 주의 기금을 위해 연방법 하에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수익금 또는 수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998.557. 본 조에 의해 승인된 공채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경우, 그 용어가 California 주 헌법 XIII B 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조세 수익금(proceeds of taxes)" 이 아니므로, 주의회는 이러한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에서 부과한 제한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힌다.

### 발의안 제42호

2013-2014 정기 회기의 상원 헌법 수정안 3(2013년 제정법, 결의안 123장)에 의해 제안된 본 수정안에서는 California 주 헌법에 속한 절(section)을 수정하므로, 명백히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조항은 신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 I조 3절 및 XIII B조 6절에 대해 제안된 수정안

첫째—I조 3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절. (a) 대중은 자신들의 대표에게 표결을 지시하고,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탄원하며, 공익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b) (1) 대중은 자신들의 관심사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공공 단체의 회의 및 공직자와 공공 기관의 문서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항(subdivision)의 발효일에 시행 중인 것들을 포함하여, 법령, 법원 규칙 또는 기타 판례의 경우, 그것이 대중의 접근권을 진전시킨다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것이 접근권을 제한한다면,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항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었으며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령, 법원 규칙 또는 기타 판례의 경우, 접근권 제한으로 권익이 보호되며 그러한 권익 보호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도 채택되어야 한다.

(3) 본 항 내의 어떠한 것도 1절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보안관의 공직 수행 또는 전문적 자격 요건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나 발표를 관장하는 법정 절차를 포함하여, 그것이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어떠한 법령, 법원 규칙 또는 기타 판례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7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개인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포함하여, 본 항 내의 어떠한 것도 본 헌법의 조항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5) 본 항은 본 항의 발효일에 시행 중인 공공 단체의 공공 기록 또는 공개 회의 접근권에 대한 헌법 또는 법령상의 예외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폐지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법 집행 및 검찰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모든 법령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6) 본 항 내의 어떠한 것도 IV조의 7절, 주 법률 또는 그러한 조항의 진척을 위해 채택한 입법 규칙에 규정된 주 의회, 주 의회 의원 및 그 직원, 위원회, 간부 회의의 공식 기록 및 회의록의 기밀성 보호책을 폐지, 무효화, 대체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주 의회, 주 의회 의원 및 그 직원, 위원회 및 간부 회의의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법 절차 또는 행정 절차에서 허용된 개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단락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단체의 회의 및 공직자와 공공 기관의 문서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정부 기관이 *California* 주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권 제7부 3.5장(6250절로 시작)) 및 *Ralph M. Brown* 법(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편 9장(54950절로 시작))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각각의 법률을 수정하고 후속 법률을 제정하거나 후속 법률을 수정하는 차후의 모든 법률 제정 절차에 응해야 하며, 이 때 이러한 법률 제정이 본 절의 목적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XIII B조 6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절. (a) 주 의회 또는 주 정부 기관이 지방 정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명령할 때마다, 주는 해당 지방 정부에 해당 프로그램 또는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위한 경비를 번체해 주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명령의 경우, 주 의회는 자금 지원을 제공해도 되나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1) 영향을 받는 지방 기관에서 요청한 입법부 명령

(2) 신규 범죄 정의 또는 기존 범죄의 정의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3) 1975년 1월 1일 전에 제정된 입법부 명령, 또는 1975년 1월 1일 전에 제정된 법률을 최초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나 규제

(4) I 조 3절 (b)항의 단락 (7)의 범위 내의 법령에 포함되는 입법부 명령

(b) (1) 단락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2005-06 회계 연도 및 모든 후속 회계 연도에 대해, 지방 정부 측 청구인의 비용을 법률상 주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전 회계 연도에 결정한 명령의 경우, 주의회는 연간 예산법(annual Budget Act) 내에서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전체 지불금을 충당하거나, 법률상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연간 예산법이 적용되는 회계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명령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2) 2004-05 회계연도 전에 발생했으나 2005-06 회계연도 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지불 청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수년간 나눠서 지불될 수 있다.

(3) 증가 재산세 수입은 신규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본 항은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5) 미래, 현재 또는 과거 지방 정부의 고용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본 절의 영향을 받는 명령의 구성 요소가 되는, 지방 정부 직원이나 퇴직자 또는 지방 정부 고용인 조직의 절차적이거나 실질적인 보호책, 권리, 혜택 또는 근무 상태를 규정하거나 인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c) 신규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명령에는, 이전에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 재정 책임이 주에 있었던 필수 프로그램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재정 책임을, 주의회가 주에서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또는 특별 선거구로 이양하는 것이 포함된다.